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0.12.13
개정 2012.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 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의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 1절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역할

제4조(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의 결과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

를 준수해야 한다.

제 2절 연구의 기록, 보고 및 보관

- 제8조(연구 과정 · 결과의 기록, 보고 및 보관)** ① (기록)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교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을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보고 및 보관)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의 결과를 연구 종료 6개월 이내 산학협력단 혹은 연구 관리를 위임받은 스쿨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소 5년간 연구 관련 기록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3절 연구책임자의 책무

- 제9조(책임범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 직원교육, 데이터 수집 · 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안전관리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에서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자들이 본교 '실험실 습실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유해 화학물질 · 실험폐기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연구 부정행위

- 제11조(부정행위)**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 · 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저작물 혹은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나.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및 표현(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다.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된다.
 - 라.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 또는 저작물에서 연속적으로 2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마. 연구계획서 작성 시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
 - 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아이디어(지적 재산) 표절에 해당된다.
 - 사. 이미 발표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전문 교과서에서 출간되어 전문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도 인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결과 혹은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 가. (저자 자격 기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나. (저자 표시 순서)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 (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서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는 경우 자료의 중복사용에 해당되나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가. (중복게재)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중복게재는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해당되며 학위논문, 연구 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에 대하여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 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들에 대해 적절히 인용하여야 한다.

마. (다른 언어 사이의 중복게재) 학문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바. (조각출판) 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데이터 중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는 조각출판(Salami publication)으로 자료의 중복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

사. (논문의 중복 투고)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처음 투고한 학술지 게재가 거부되거나 논문의 게재가 철회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이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

제12조(검증주체)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하 ‘본조사’라 한다.)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의 보호, 제보 또는 본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본 규정의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11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

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2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의 별도 의결에 따른다.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6 장 이해 상충

제26조(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학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7조(현신의무의 상충) ①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때 한 직무의 수행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②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는 교육, 연구, 학술활동, 학생지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교수로서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외부활동이나 연구수주를 피하여야 한다.

제28조(상충문제 관리의무) 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④ 이해 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